

의안번호	2211603
의 퇴 인	서일준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1.
추 계 번호	25A3857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3호 (정의)	“기술혁신주체”란 산업기술혁신 ²⁾ 을 수행하는 국내외 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함 * 기존 “기술혁신주체”의 정의에 <u>국외</u> 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을 추가	의무규정
2	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(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)	산업통상부장관 ³⁾ 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서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(제7호), 국내외 기술혁신주체의 국제기술협력 활동 지원(제8호)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* 기존 “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”의 범위에 위 2개 사업을 추가	재량규정
3	안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(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)	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국외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, 정보 및 인력 교류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* 기존 “국제공동연구 활성화사업”의 범위에 위 사업을 추가	재량규정

- 1) 개정안의 내용 중 제38조제3항제6호를 신설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“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”을 추가하는 사항의 경우 현행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 기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므로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함
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(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)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<u>한국산업기술진흥원</u>(이하 “기술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.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.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.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.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.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」 제9조(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) 법 제38조제3항제5호*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2.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

* 개정 누락(제6호의 오기)

- 2)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산업기술”이란 「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산업, 「광업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, 「에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.
 2. “산업기술혁신”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[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·디자인·개발·개량하는 제품·서비스혁신과 제품·서비스생산의 과정·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(工程革新)을 포함한다]활동을 수행하고,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
- 3) 2025.10.1.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개편되었으므로 변경된 부처명을 반영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조제3호 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(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)	
3	안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(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혁신주체의 범위에 국외 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고 국제기술협력 및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현재 산업통상부는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국외사무소 설치·운영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업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될 경우 기존 사업의 예산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[기존 재정사업(내역사업 기준)]
 - － 기술선진국 중심의 양자협력 또는 2개국 이상과의 다자협력 등을 통한 국가 간 공동 R&D 과제 수행 연구비 지원[사업명: 산업기술국제협력(R&D)－국제공동기술개발]
 - － 워싱턴, 브뤼셀 등 7개 도시⁴⁾에 해외기술협력거점(국외사무소)을 설치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[사업명: 산업기술국제협력(R&D)－국제협력기반구축]

4)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워싱턴, 브뤼셀, 하노이)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실리콘밸리, 보스턴, 베를린),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(이스라엘)

-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예일대, 존스홉킨스대 등 해외 현지 우수 연구기관(8개)⁵⁾과 공동연구과제를 발굴·기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 [사업명: 산업기술국제협력(R&D)-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]
- 국내 신진연구자의 해외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고, 우수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석학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연구장비·재료비 등 프로젝트 운영비 지원[사업명: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R&D)-해외연계]

* [참고자료] 국제산업기술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사업 실시 현황

□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사업의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예산 소요를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, 국외사무소 운영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확대 계획과 이에 따른 재정 투입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에 따라 실시될 재정 사업은 그 내용과 예산 규모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으로, 재정 투입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 및 향후 사업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
-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해외기술협력거점(국외사무소)이나 해외공동연구과제 지원 확대 계획,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 등 관련 신규 사업의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, 재정소요 추계를 위한 사업량 및 단가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산업통상부는 현재 운영 중인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8개소를 2030년까지 누적 1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, 협력센터 운영 및 해당 센터를 통한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803억원을 투입할 계획 (중기재정계획 기준)⁶⁾

5) 미국(예일대, 존스홉킨스대, 퍼듀대, 조지아텍, MIT), 독일(프라운호퍼), 캐나다(토론토대), 영국(UCL)

6) 다만, 이는 산업통상부가 현재 실시 중인 사업 중 일부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이며, 구체적인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제시

[표]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(2024~2030년):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관련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 (24~30)
협력센터 운영	180	12	24	36	36	36	24	348
공동연구과제수행	395	1,040	1,330	1,750	1,775	2,195	1,970	10,455
합계	575	1,052	1,354	1,786	1,811	2,231	1,994	10,803

자료: 산업통상부

- 이에 이 법에 따른 기술혁신주체의 범위에 국외 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고, 국제기술협력 및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국제산업기술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사업 실시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-내역사업	사업 내용	예산	
		2025	2026(안)
산업기술국제협력(R&D) (일반회계, 3171-320)	-	(209,832)	(230,678)
- 국제공동기술개발	해외 수요연계 기술개발, 현지화 등 기업 요소기술 확보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양다자 협력국 간 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	94,224	91,370
- 국제협력기반구축	글로벌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해외 파트너 등 협력 수요 발굴	5,908	5,908
-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	국내 기업의 협력수요가 높은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 내 한국과의 협력거점으로서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지원	105,200	127,400
소계		205,332	224,678
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R&D) (일반회계, 3161-315)	-	(166,145)	(201,395)
- 해외연계	①신진연구자 해외 공동연구, ②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기업 연계, ③해외 석학 유치를 지원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촉진	8,600	16,200
합계		213,932	240,878

주: 괄호 안의 금액은 해당 세부사업의 전체 예산액

자료: 산업통상부